

「(지역장려금) 하나통장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「(지역장려금) 하나통장」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- 이 예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가입대상자로 확인한 만14세 이상 만40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.
- 지자체의 각 사업별로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제4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.

제5조 상품명

이 예금의 상품명 중 “(지역장려금)”은 가입시 지역과 장려금에 따라 변경됩니다.

제6조 이자지급

-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를 적용하며(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고시금리), 최초 예금일(또는 원가일)로부터 원가일(또는 지급일)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기간으로 보고, 매월 세번째 금요일 다음 영업일(원가일)에 원금에 더합니다.
-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, 전환일부터 전환 후 예금의 금리를 적용합니다

제7조 우대금리

- 이 예금의 매일의 최종 잔액 중 2백만원이하 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1항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하며, 우대금리는 상품설명서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- 급여이체 우대금리는 ‘(지역장려금) 하나통장’으로 급여^(주1)가 입금된 경우 다음달에 제공합니다.

(주1) 급여 입금 인정기준 :

-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*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
(ex. *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상여, 성과, 보너스, SALARY, PAY 등/ 등록직장명)
- 회사에 의한 ‘급여코드’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
- 손님이 ‘급여일’을 지정(등록)하고,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
※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(카드대금, 보험료 등)거래, 자동화기기 입금분,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
※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

- ③ 지역장려금 우대금리는 이 예금으로 당행과 협약한 지자체의 지역장려금(지원금)이 입금 확인된 경우 6개월 간 제공합니다.
- ④ 우대금리는 전월의 우대항목 실적을 확인하여 전월 원가일부터 당월 원가일(또는 지급일)전일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.

제8조 수수료 우대서비스

※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제7조 제2항의 실적을 충족 할 경우 충족월의 다음달에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(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 하여 제공)

수수료 항목	우대내용
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	무제한 면제 ※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
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, 폰뱅킹(ARS)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	
납부자 자동이체(타행자동이체)수수료	
타행자동화기기*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	
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	

*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며, 은행 외부에 설치된 CD기(또는 ATM기) 및 한컴/효성/나이스 등 VAN사 CD기(또는 ATM기)에서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음.

제9조 상품전환

- ①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또는 이 예금 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.
- ② 이 예금 상품 가입 후, 만42세 이후 첫번째 도래하는 결산일에 [주거래 하나통장]으로 자동전환 됩니다. 단, [주거래 하나통장]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[저축예금]으로 자동전환 됩니다.
전환 이후에는 전환된 상품의 우대서비스 및 혜택만 제공합니다.

<부 칙>

- 1.이 특약은 2024년 11월 11일 부터 시행합니다.
- 2.이 특약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

※ 이 약관은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